

부담금의 종류 및 부담률

부담금의 종류		부담자	대상금액	부담률						납부방법
				2015년 이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이후	
개인부담금 및 소급분	당월분	교직원	기준소득월액의	7%	8%	8.25%	8.5%	8.75%	9%	월납
	동일법인소급분	해당교직원								
	군소급분	해당교직원		14%	16%	16.5%	17%	17.5%	18%	
	타법인소급분									
법인부담금(교원)		학교(법인)	개인부담금 합계액의	4117/7000	4705/8000	4852/8250	5000/8500	5147/8750	5294/9000	
국가부담금(교원)		국가	개인부담금 합계액의	2883/7000	3295/8000	3398/8250	3500/8500	3603/8750	3706/9000	분기납
법인부담금(사무직원)		학교(법인)	기준소득월액의	7%	8%	8.25%	8.5%	8.75%	9%	월납
재해보상부담금		학교(법인)	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/10000							월납
퇴직수당 부담금	법인부담금	학교(법인)	퇴직수당 40/100							월납
	국가부담금	국가	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							연납
	공단부담금	법인	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							연납

※ 퇴직수당지급에 드는 비용(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 3)의 개정으로 기존에 국가와 공단이 부담해왔던 퇴직수당부담금을 초·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서만 100분의 40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. (시행일 : 2014.3.1)